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68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재판경과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687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나1611 판결

###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나1611 판결

판결선고 2011. 2.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 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지만(민법 제498조)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 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된 채권이 장래 발생할 채권으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피압류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 수동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중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의 변제기가 그 후에 발생한 위 예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의 피압류채권 중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민법 제498조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주 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신영철